

부정행위자 처리

감독자는 [교무행정요강](#) 제71조에 정한 부정행위자 처벌규칙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고, 부정행위자 발생 시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합니다.

교무행정요강 제71조 (부정행위자 처리)

1. **(응시불허)** 시험문제를 발표한 후에는 응시자의 입장을 불허한다. 다만,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.
2. **(답안지 무효)**
 - 1) 응시자가 본인 성명을 지웠다가 다시 기재한 경우
 - 2) 타인의 답안지, 노트, 메모,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경우
3. **(무기정확)**
 - 1) 답안지를 작성, 상호 교환한 경우
 - 2) 대리 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
 - 3) 고사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, 투입한 경우
 - 4)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
4. **(유기정확)**
 - 1) 노트나 교재, 메모,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
 - 2) 타인의 답안지 작성을 구두로 방조하는 경우
5. **(퇴학처분)**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학생 신분을 벗어난 반항 또는 항거 행위를 한 자.

시험 감독 유의사항

교강사 제위께

학생 지도에 수고가 많습니다.

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시험 분위기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.

1. [학칙시행세칙](#) 제13조에 따라 **시험 감독은 학기 중 배정된 시간에 담당 교강사께서 직접 감독**하여 주십시오. (조교 등 대리 감독은 불가합니다)

학칙시행세칙 | 제13조(시험감독)

시험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 시작 전 철저한 사전 교육을 해주십시오.
3. 시험 중 휴대폰 및 기타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.
4. 필답에 필요한 도구 이외의 물건은 책상 주변에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.
5. 시험지 또는 답안지를 인원수에 맞게 나누어 주십시오.
(필요한 경우 기재부된 시험지(답안지)를 회수한 후 재배부하여 주십시오)
6. 시험지에 소속 대학, 학과, 전공, 학번 및 성명 등을 고사 전 청색 또는 흑색 볼펜으로 빠짐없이 기재토록 하여 주십시오.
7. [학칙시행세칙](#) 제8조에 따라 **미수강신청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**하여 주십시오.

학칙시행세칙 | 제8조(미신청이수)

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8. 시험 전에 출석부를 재출력하여 수강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.
9. 장애인 학생에게는 시험을 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